〈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플라타너스(PLATANUS)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세화에프앤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57(장안동,606호)]

[대표전화번호 : 02.2244.0096] [대표팩스번호 : 02.2244.0097] [가맹사업팀 : 02.2244.009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게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플라타너스(PL	ATANUS)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57 (장안동, 606호)				
(주)세화에프	2011.03.08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대표팩스번호
앤씨			2011.12.19	윤형만	02-22	02-2244-0096 02-224	
			1-4551556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번호 408-81		-81-9378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①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용인 즐겁니 플라타너스		서울시 동대문구	² 장안1동 413-5	JAX타워 606호
(대표)	윤형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引亞)		(PLATANUS)	윤형만	02-2244-0096	02-2244-00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રો છે હો	윤광영	플라타너스 (PLATANUS)	서울시 동대문구	² 장안1동 413-5	JAX타워 606호
사용인 (임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급전)			윤형만	02-2244-0096	02-2244-009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카페플라타너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플라타너스(PLATANUS)	romantic life with platanus
상 호 ^②	카페플라타너스 000점	
상표(서비스표) ^③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 30류 구기자차등 19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 및 구분 제43류 간이식당업등 24건	상표 등록번호: 제 40-0702533 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1-0149086 호 출원 등록번호: 45-2016-0001083 호
광 고 ^④	Platanus platanus platanus platanus romantic life with platanus	ままれい。 また小 타かトトカリ 学 Platanus PLATANUS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mathbb{Q}}$ 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02,744	311,832	-209,087	53,301	-82,360	-80,723
2022년	71,994	359,738	-287,743	21,499	-88,905	-78,656
2023년	53,675	394,294	-340,619	13,025	-51,897	-52,875

- ▶재무현황 및 손인계산서 세부현황은 [별지- 1,2] 참조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2023년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20%~30%입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플라타너스(PLATANUS) 외, 컨설팅용역, 커피기기렌탈 및 도소매 전자 상거래 등 타 사업도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사업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액과 전자상거래 및 렌탈 매출액으로 구성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7) A) H(3)	ما ت	구) 기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O 처리	대표이사	2009.3~현재	(주)플라타너스에프앤씨 대표	회사업무총괄
관련 임원	윤형만		2011.03~현재	(주)세화에프앤씨 대표	회사업무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윤광영	사내이사	2011~현재	(주)세화에프앤씨 이사	사내경영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
2023년 12월 31일	1	1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	사업내용 ^②
특수관계인	윤형만	(주)세화에프앤씨 경영총괄	2011.3.8~현 제	플라타너스(PLATANUS) 영업표지의 커피전문점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윤광영	(주)세화에프앤씨 사내이사	2011.3.8~현 제	플라타너스(PLATANUS) 영업표지의 커피전문점사업 사내이사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상표등록 플라타너스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 30류	2006.05.17. 출원 2007.03.16. 등록	출원 제2006-0026389호	윤형만	2027.03.16
(PLATANUS)	구기자차등 19건	자능 등록			
서비스표등록플라 타너스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 및	2006.05.17. 출원	출원 제2006-0012492호	윤형만	2027.05.23
(PLATANUS)	구분 제43류 간이식당업등 24건	2007.05.23 등록 등록 제 41-0149086호		202	_0_11001_0
상표등록 크로와상 타이야끼몽	상표를 사용할 상품	2016.02.04 출원 2016.11.21 등록	출원 45-2016-0001083 등록 4500696350000	윤형만	2026.11.24
상표출원 크로와상핫도그 DOGMONG	상표를 사용할 상품	2016.11.28 출원	출원 40-2016-0104814 등록 제 40-1288500호	윤형만	2027.09.23

^{*}위표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ш. 가맹본부의 [플라타너스(PLATANUS)] 가맹사업 현황

1. [플라타너스(PLATANUS)] 를 시작한 날: 2006년 5월 01일

2. [플라타너스(PLATANUS)]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쿨아이디어	PLATANUS(플라타 너스)	김주영	2006.05~2012.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86-10 수다프라자4층
(주)쿨패밀리	PLATANUS(플라타 너스)	조문환	2012.12~2013.06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8-7 맥산빌딩 5층
(주)세화에프앤 씨	PLATANUS(플라타 너스)	윤형만	2012.11.1.~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413-5 JAX타워 606호

3. [플라타너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프리티니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플라타너스	커피	커피,음료,디저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플라타너스(PLATANUS)]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z) 6년	2021.12.31.		2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3	-	2	2	_	2	2	_
서울	1	1	_	_	_	_	_	_	_
부산	_	_	-	-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ı	_	_	-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	-	_	_	ı	_	_
세종	_	_	_	_	_	-	_	-	_
경기	2	2	-	2	2	_	2	2	_
강원	_	_	-	-	_	_	_	_	_
충북	_	_	_	_	_	-	_	-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	_	_	-	-	_
경남	_	_	_	-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플라타너스(PLATANUS)]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2021	5	_	2	_	_	3
2022	3	_	1	_	_	2
2023	2	_	_	_	_	2

[플라타너스]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플라타너스(PLATANUS)]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플라타너스(PLATANUS)]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 $^{\mathbb{Q}}$ 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mathbb{Q}}$

카페플라타너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 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³.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처워,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④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매출액(연간 매출액(비교 ^⑤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⁹	면적 3.3m ² 당	상한 ^⑩	면적 3.3m ² 당 [®]	하한 [@]	면적 3.3m ² 당 [®]		
전체 ⁶	2	50,855	5,345	76,525	6,409	25,185	3,552		
서울	_	해당없음							
부산	_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2	해당없음						5곳 미	간
강원	_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_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

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또한 작성된 매출은 부가세매출을 제외한 금액이며 매장 평균 면적인 15평(PY)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한/하한 매출은 매장 매출기준에서 상하매출 매장 기준이며 연간평균매출액은 전 가맹점 매출에서 매장수를 나눈 평균매출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플라타너스(PLATANUS)]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플라타너스(PLATANUS)]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2	268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①	수단 ²	기간 ³	지출 비 합계	용(단위: 천역 미포함) 가맹본부	원, 부가세 가맹점	비고 ^④
합계	비공개					
	소계					
7)	비공개					
광고	비공개					
	비공개					
	소계					
판촉	비공개					

당사는 가맹점에 광고/판촉 비용 부담에 따른 지출 내역 사항이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KB국민은행	용답동 지점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 장안빌딩 1층	02-2249-3691 fax. 02-2249-8563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세화에프앤씨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mathbb{Q}}$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플라타너스(PLATANUS)]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8,000]				
가입비	10,000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म) 용	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0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 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홍보비	3,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³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 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합계	21,000
가입비	10,000
교육비	5,000
개점행사비	3,000
(현금)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

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99m²[30평]기준)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면적 3.3m ² 당 금액 [®]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 <u>고</u> ④
총계		[139,800~ 157,300]	4,660~5,243			
감리 및 설계	(주)세화 에프앤씨	16,000	533	공사10일 전	공사 취소시	설계비 700만원, 감리영업면적(3.3 ㎡) 당 30만원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미지정) 또는 (주)세화 에프앤씨	60,000(보통형) 75,000(고급형)	2,000(보통형) 2,500(고급형)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계약취소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700천원 추가부담(보통형, 고급형의 경우 800천원)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세화 에프앤씨	3,000~5,000	100~167	물품 공급 10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초도물류비용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주)세화 에프앤씨	500~1,000	17~334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소모품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집기/주 방설비	(주)세화 에프앤씨	47,000	1,567	물품 공급 10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커피머신류 기타
의탁자/ 가구	(주)세화 에프앤씨	10,000	333	물품 공급 10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가구 일체
간판/부 착	(주)세화 에프앤씨	3,000	100	제작 발주 5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1개소 간판 규격
로열티	(주)세화 에프앤씨	300	10		해지나 폐업시	영업면적(3.3㎡) 당 1만원,최대30만원

[위 표의 금액은 30평(py)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설계 7,000천원과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300천원 (VAT별도)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공 10일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①	선정 기준 ^②
당사 경영지원팀 (전화:02-2244-0096)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②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카페플라타너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18,000	총액의 50%	30%	2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0일	개점5일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부 ^①	지급대산2	금액 [®]	지급기하	바화조거	바화된 수	비 고 ^④
1 正	기ㅂ네.요		기타기인	민전끄신	민원들 ㅜ	" -1"

					없는 사유	
상표사용료	가맹자사업 자전액 부담	300	매월초	가맹해지나 취소		[WI-1 참조]
리스료	가맹자사업 자전액 부담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협의 분담					[V-8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WI-2 참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사항없 음	해당사항없음				
추가요청 교육훈련비	가맹자사업 자전액 부담	2,000	교육 실시 10일 이전	취소요청시		필요요청시에만 해당 지급(1인기준)
간판류 임차료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⑤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사항없 음	해당사항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WI-1 참조]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WI-1 참조]
재고관리 비용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회계처리 비용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POS 사용료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지연이자 [©]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연 20%				지급물품대금 연체시 적용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2개 가맹점 연매출(1년환산) 101,710,000 원에서 평균가맹점 매출액(50,855,000원)에서 매출액대비 3%비율의 해당하는 당사 발주 물품구매율을 곱하여 그중 마진율 20%를 산출한 결과 매장별로 연간 약 305,130원 정도의 차액가맹금 발생함을 추정하였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

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플라타너스(PLATANUS)]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세화에프앤씨]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사항은 가맹본부의 동의하에 진행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5%~1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플라타너스(PLATANUS)]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원부재료 상세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PLATANUS(플라타너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PLATANUS(플라타너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 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②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³	산정기준 ^④	금액 ^⑤	비고 [©]
해당없음					

2) 당사가 [PLATANUS(플라타너스)]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프 / O 어머	게취네 Q 미 フ기	이비기 케이	ען –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에스프레소 S			
에스프레소 마끼야또			
에스프레소 콘파냐 S			
아메리카노 S			
아메리카노 T			
ICE 아메리코노 Venti			
카페 라떼 S			
카페 라떼 T			
바닐라 라떼 S			
바닐라 라떼 T			
카라멜 라떼 S			
카라멜 라떼 T			
카페 클라우드 S			
카페 클라우드 T			
카라멜 클라우드 S			
카라멜 클라우드 T			
바닐라 클라우드 S			
바닐라 클라우드 T			
카페모카 S			
카페모카 T			
화이트 모카 S			
화이트 모카 T	-당사가 제공하는		
카라멜 모카 S	조리 기준 및		
카라멜 모카 T	제공원칙에 의해		
카라멜 마끼야또 S			
카라멜 마끼야또 T	소비자에게		
아포가또	제공하여야함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가을밤의 꿈		게약 해지	
달콤한 시민	 -왼쪽에 기재되지	, , , , ,	
고구마 라떼 S			
고구마 라떼 T	않는 상품은		
그린티 라떼 S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그린티 라떼 T	판매가능함		
달콩 보라구마 S			
달콩 보라구마 T			
블랙티 라떼 S			
블랙티 라떼 T			
차이 라떼 S			
차이 라떼 T 노키			
녹차 민주리			
다즐링			
라벤더 카모마일			
될 쟈스민			
잉글리쉬 블랙퍼스트			
얼 그레이 으기키			
유자차 레몬 아이스티			
역중 아이스터 복숭아 아이스티			
매실 에이드 오미자 에이드			
보이자 에이드 블루 에이드			
핑크 에이드			
그린 에이드			
플레인 요요또			

딸기 요요또 세리베리 요요또 유자 요요또 바나나 스윙 스트로베리 스윙 카라멜 플라푸치노 초코 플라푸치노 녹차 플라푸치노 바다나쥬스 키위쥬스 딸+ 바 믹스쥬스 丁타 베이커리 기타 티음료	
유자 요요또 바나나 스윙 스트로베리 스윙 카라멜 플라푸치노 초코 플라푸치노 녹차 플라푸치노 유자 플라푸치노 마가 플라푸치노 말기쥬스 바나나쥬스 키위쥬스 말+ 바 믹스쥬스 말+ 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바나나 스윙 스트로베리 스윙 카라멜 플라푸치노 초코 플라푸치노 녹차 플라푸치노 유자 플라푸치노 말기쥬스 바나나쥬스 키위쥬스 말+ 바 믹스쥬스 말+ 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스트로베리 스윙 카라멜 플라푸치노 초코 플라푸치노 녹차 플라푸치노 유자 플라푸치노 딸기쥬스 바나나쥬스 키위쥬스 말+ 바 믹스쥬스 말+ 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카라멜 플라푸치노	
초코 플라푸치노 녹차 플라푸치노 유자 플라푸치노 딸기쥬스 바나나쥬스 키위쥬스 딸+바 믹스쥬스 딸+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녹차 플라푸치노 유자 플라푸치노 딸기쥬스 바나나쥬스 키위쥬스 말+ 바 믹스쥬스 딸+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유자 플라푸치노 말기쥬스 바나나쥬스 키위쥬스 말+ 바 믹스쥬스 딸+ 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딸기쥬스 바나나쥬스 키위쥬스 딸+ 바 믹스쥬스 딸+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티음료 기타 티음료	
바나나쥬스 키위쥬스 딸+바 믹스쥬스 딸+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키위쥬스 딸+ 바 믹스쥬스 딸+ 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딸+ 바 믹스쥬스 딸+ 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딸+키 믹스쥬스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기타 베이커리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기타 음료 기타 티음료	
기타 티음료	
기타 병 및 판매음료	
블루베리 베이글	
시나몬 베이글	
어니언 베이글	
플레인 베이글	
초코칩 머핀	
블루베리 머핀	
아몬드 초코 머핀	
프레즐	
크로크 무슈	
허니브래드	
베이글	
타이야끼류	
빙수류	

상품·용역명 ^①	제한내용 및 조건 ^②	위반시 책임 ³	비고 ^④
플라타너스 커피 원두 및 음료 제조 원료 , 기타 판매제품 및 부자재	플라타너스 원두 및 브랜드로고 부자재를 이용하지 않는 커피음료는 판매할 수 없으며 원부자재유통을 허락 없이하여서도 안 됨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후에는 다양한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는데에 제한을 하지않으며 구두상의 자료에 의하거나 계약상에 명기하여 승인할 경우 제한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혐오적이거나 불법적인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제한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

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①	상품·용역명 ^②	제한내용 및 조건 ^③	위반시 책임 ^④	비고⑤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1회 위반: 구두 경고	
경쟁업체 및	당사에서		2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동종업 타사	공급받는 상품	수 없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매장위치 및 환경에 따라 가격결 정의 제한 및 가격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통보방법	비고
상품/용역명 에스프레소 S 에스프레소 마끼야또 에스프레소 콘파냐 S 아메리카노 S 아메리카노 T ICE 아메리코노 Venti 카페 라떼 S 카페 라떼 T 바닐라 라떼 T 카라멜 라떼 S 카라멜 라떼 T	권장가격 (단위:원) 2100 2400 2400 2300 2800 3300 2800 3300 3500 3500 3500	가격통보방법 홈페이지 공지 및 서면통지 (각 가맹점으로 공문발송)	비고 가맹점의 여건 및 입점상황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공문발송)	변경 가능함
바닐라 클라우드 T	3500		

카페모카 S	3300	
카페모카 T	3800	
화이트 모카 S	3300	
화이트 모카 T	3800	
카라멜 모카 S	3300	
카라멜 모카 T	3800	
카라멜 마끼야또 S	3200	
카라멜 마끼야또 T	3700	
아포가또	3500	
	3800	
	3800	
달음반 시킨 고구마 라떼 S	3000	
고구마 라떼 T		
	3500	
그린티 라떼 S	3000	
그린티 라떼 T	3500	
달콩 보라구마 S	3000	
달콩 보라구마 T	3500	
블랙티 라뗴 S	3000	
블랙티 라떼 T	3500	
차이 라떼 S	3000	
차이 라뗴 T	3500	
녹차	2700	
다즐링	2700	
라벤더	2700	
카모마일	2700	
펄 쟈스민	2700	
잉글리쉬 블랙퍼스트	2700	
얼 그레이	2700	
유자차	3200	
레몬 아이스티	2000	
복숭아 아이스티	2000	
매실 에이드	3800	
오미자 에이드	3800	
블루 에이드	3800	
핑크 에이드	3800	
그린 에이드	3800	
플레인 요요또	3800	
딸기 요요또	3800	
베리베리 요요또	3800	
유자 요요또	3800	
바나나 스윙	3800	
 스트로베리 스윙	3800	
 카라멜 플라푸치노	3800	
조코 플라푸치노	3800	
조고 들다구시도 녹차 플라푸치노	3800	
숙자 들다누시도 유자 플라푸치노		
	3800	
	3500	
바나나쥬스	3500	
키위쥬스	3500	
딸+바 믹스쥬스	3800	
딸+키 믹스쥬스	3800	
플타팥빙수	6500	
초코빙수	7000	
녹차빙수	7000	
블루베리 베이글	1500	
시나몬 베이글	1500	
어니언 베이글	1500	
플레인 베이글	1500	

초코칩 머핀	2300
블루베리 머핀	2300
아몬드 초코 머핀	2300
프레즐	2500
크로크 무슈	3000
타이야끼류	2800
베이글	3500
허니브레드	4000
빙수류	8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중 달만 답중 함치 ·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전문점 가맹사업	플라타너스(PLATANUS)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특수상권제외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레크카 자스 비계 . 디카 리미리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미 전포 표점 기정)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플라타너스(PLATANUS)'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플라타너스(PLATANUS)'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플라타너스(PLATANUS)'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유통업체명 ^②	주소	취급품목 ^③	가맹점과의 구분 ^④
온라인	cefeplta	cafeplta.com	원두 및 부자재	본사 직영 유통
근다인	_	_	_	_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특수상권에 한하여 위 300m 구역 설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내 가맹사업자를 우선적 협의 후 특수상권내 영업지역 설정이 변경/조절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천원,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매출액	0	0	0	0
2023 비중	100%	0%	0%	0%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플라타너스(PLATANUS)]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

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0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0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40조 1항
○ [PLATANUS(플라타너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40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0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부재료 등 물품공급의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 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 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 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41조 1항 (재31조 1항 - 원부재료 등공급의중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Ó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1조2항
Ó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41조2항
Ó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1조2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1조2항

_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L	ł.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ד	구.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Ó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1조2항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41528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Ò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41조2항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415228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Ó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1조 2항
Ó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41조 2항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Ó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1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	43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해당 사항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잔존계약에 따른 가맹금을 포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	비교 ^④
七十章 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인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맹 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 개시 전까지 가맹본부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가맹 본부의 사전 승인없는 양도양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①	가능 여부(조건) ²	이전 범위 ^③	절차 ^④	기타 의무사항 ^⑤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은 상속개시 3개월이내 승계의사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절차에 따라 영업개시할 수 있음(상속자가 다수일	상속인은 가맹본부에서 정한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경우 영업승계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통지하여야함)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플라타너스(PLATANUS)]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①	경업허가 절차 ^②	비고 ^③
사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문의: 경영지원팀
。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완료	(02 2244 003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플라타너스(PLATANUS)]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에 영업시간 조정	주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정이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	문의: 경영지원팀 (02-2244-009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영업장 자율에 의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요청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세화에프앤씨와 귀하가 각 1부7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플라타너스(PLATANUS)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부담비율		
구분 ^①	성격 ²	본사부담 ③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④	비고 ^⑤
전국단위광고	제품 및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중 가맹점 전체 매출액 대비 각 가맹 사업자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지역단위/개 별광고	제품 및 브랜드 광고	_	전액부담(경우에따라 가맹본부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가능)	가맹본부는 광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책정하여 각 가맹점	
개별판촉	개별행사	-	전액부담(경우에따라 가맹본부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가능)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각 가맹점사업자는 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납입	
할인카드·멤버 십 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H H		
가맹모집광고		본사브	부담 100%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문구,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해당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가맹계약서 제공	D-46~45	해당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해당없음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해당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해당없음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9(1일)	21,000 [IV-1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가맹사업자가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선정 시공시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감리비별도 (가맹본부 지정시공)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가맹금예치포함 [IV-1참조]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139,800~ 157,300 [IV-1참조]
점포 마케팅	- 홍보 전단지,배너,쿠폰 등 물품제공	D-day	점포개설비포함 [IV-1참조]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보수할 것을 요구 및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할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전액부담으로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 해당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경영지원팀 (02-2244-0096)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경영지원팀 (02-2244-0096)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제공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없음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플라타너스(PLATANUS)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플라타너스(PLATANUS)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교육사정에 따라 다름	2,200	필요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 조 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 조 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사항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³
해당사항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경우에는 당사 경영지원팀(02-2244-009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
- 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2021(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0-2021(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2022(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2023(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2023(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CAFE PLATANUS(카페 플라타너스)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년 월 일 2.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년 월 일
-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③가맹본부의 및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교육 훈련프로그램
- 4. 가맹희망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가맹본부: (주)세화에프앤씨 (인) 수령자 : (인) (주민번호:)

-----(절 취 선)-----

정보공개서 확인증 (가맹사업자 보관용)

본인은 CAFE PLATANUS(카페 플라타너스)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년 월 일 2.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년 월 일
-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③가맹본부의 및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교육 훈련프로그램
- 4. 가맹희망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가맹본부 : (주)세화에프앤씨 (인) 수령자 : (인)

(주민번호: